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3. 24.

예천군의회



1. 제정이유

- 예천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주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 용어에 대한 정의

나.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안 제3조 및 제7조)

-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예천군의회 의원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음
-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4조)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둠

라. 의원연구단체 지원 (안 제11조)

-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 편성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조례안 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4,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junu0920@korea.kr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자의 여론 수렴, 조사 및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연장자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예천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

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등록된 내용 중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직무수행)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된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활동비 사용 및 정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3. 제5조의 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4. 의원연구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5.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관리
6. 「예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관련사항 준수 등

제9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등록취소) ① 의원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5.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제11조(의원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 1명당 지원범위는 예산편성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서식에 의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방식으로 집행하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연구
용역의 수행자가 될 수 없다.

⑥ 의원연구단체가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의원연구단체 의원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비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결과 통지서를 의원연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지원을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
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1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원연구단체 해산)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연구목적				
주요관심분야				
회원명단	직책	성명	서명	비고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단체명		
연구활동	주체	
	목적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주요내용	○ ○ ○	
연구단체 지원신청	금액	금 원(W 원)
	산출내역	
기타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경등록 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단체명			
	대표자			
	회원명단			
	기타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 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 통지서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연구목적			
심의결과	심의내용		
	연구활동비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 의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체 호



등 록 증

1. 단 체 명 :
2. 설 립 목 적 :
3. 구 성 원 : 대표자 의원, 회원 의원, 회원 의원

위 단체는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 의장 인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활동비종류			
지원신청액		지원결정액(A)	
기 수령액(B)			
금회 신청액(C)			
지원 잔액 (D=A-B-C)			
수 령 인	성 명		
	지급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붙 임 : 세부계획서, 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 :
(용역기관)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 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 구 활 동 비		
	기 타		

※ 참고자료 첨부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 결과 통지서

연구단체	단체명				
	대표자				
연구활동 계획변경	연구주제				
	과제명				
	계획변경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활동 변경사항	당초				
	변경				
기타사항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 의장 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단체명			
연구주제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연구 활동비 정산	결정액	금 원(W 원)	
	집행액	금액	
		주요내역	
잔액	금 원(W 원)		
특기사항			

- 붙임 1.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
2.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 부
3. 기타 참고자료 부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 의장 귀하

